

1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2 ()

9 【 1 】

10 【 2 】

11 【 】

12 【 】

13 【 】

3 ()

14 【 】

15 【 】

16 【 】

17 【 , 】

18 【 】

19 【 】

20 【 】

4

21 【가 】

22 【 】

23 【 】

5

- 24 【 】
- 25 【 】
- 26 【 】
- 27 【 】
- 28 【 】
- 29 【 】
- 30 【 】
- 31 【 】
- 32 【 】

6

- 33 【 】
- 34 【 】
- 35 【 】
- 36 【 가 】
- 37 【 】
- 38 【 】
- 39 【 】

2

4 【 】

가

1.

2. 15 ,

5 【 】

1.

2. ,

3. 가

4. (“ ” .)

5.

가 1 1

.

가 1 3 가

,

가

18 ()

가 1 4

가

6 【 】

가

가

7 【 】

8 【 】

가 3 (“ ”)
1 가 가 .

$$2 \quad (\quad)$$

9 【 1
1
1
1
“ ”
가 1

1 (가
가
)
가 1
. (1
)
가

2. 가
1. 22 () 가
2. 21 (가) 가
- 가
- 가

10 【 2 】

2 ,

· , ()

·

[illegible]

1

2

1

1

가

12 【

가 2

3

가

가

3

1

가

15

2

가

(

)

가

15

()

1

13 【

12 ()

2

가

, 가

+1%

가

1 (

) 4 , 9 (1

), 21 (가

) 22 ()

3 ()

14 【 】

가 1 가
(1 “ ”) .

15 【 】

가 2 3 가
.

14 () 가
, (, 27 () 2
(2) (“ ”)

가
1 14 () 180
180

가
.

가
1 1 14 ()
가 가 .

16 【 】

가 가
.

1. 가
, 가 ()
2

1 가 .

2. 가
, 가
.

3. 가

1가

1. 1 1

2. 1 2

3. 1 3

17 【 , 】

가 ,

가 가

가

1 3

가

18 【 】

19 【 】

20 【 】

2 가

4

21 【가】

$$\left(\frac{1}{2} \right)$$

(“ ”

“ ”) . 3

22 【 】

가

21 (가

) 가

- 가
1. 가
 2. 가 1 가
 3. 가 2 (1) ()
 4. 가 (가)가 가 ()

“ ”

1

1 가 가

() 가

가

21 (가)

가

23 【 】

가 2 (1) 110 ()

가 ,

?

가 가

5 (1)

24 【 】

가

1

가

가

25 【 】

가

26 【 】

가 2

1

가

가

1

가 2

27 【 】

14 ()

가

28 【 】

1. ()
2. (,)
- 3.
4. ()
5. 가

1

2

3

2

29 【 】

28 ()

3

10

22 ()

가 1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3 3

“ 가 ” “ 3 ”

가

1 3

가

1

7

4 가

18 () 1 20 ()

1. 가 : 1

50%, 1 1%

2. : +1%

30 【 】

()

14 ()

29 ()

1 (+1%

31 【 ?

23 , 12 13

?

- 1. ? ,
- 2. , , , 가
- 3.

32 【 가

1

가

10

6

33 【

34 【 가

35 【

36 【 가 】
가 ()
(, ,)

37 【 】
 ,

38 【 】

39 【 】
가

(1) _____

(14)

~.

가	가
1 가	100%

(2)

(,

) .

★ (1993 -3 , 1995. 1.1.) “ ” .

1.	V01 - V09
2.	V10 - V19
3.	V20 - V29
4.	V30 - V39
5.	V40 - V49
6.	V50 - V59
7.	V60 - V69
8.	V70 - V79
9. ()	V80 - V89
10.	V90 - V94
11.	V95 - V97
12.	V98 - V99
13.	W00 - W19
14.	W20 - W49
15.	W50 - W64
16.	W65 - W74
17.	W75 - W84
18. ,	W85 - W99
19. ,	X00 - X09
20. 가	X10 - X19
21.	X20 - X29
22.	X30 - X39
23.	X40 - X49
24.	X58 - X59

25. 가	X85 - Y09
26.	Y10 - Y34
27.	Y35 - Y36
28. ,	Y40 - Y59
29.	Y60 - Y69
30.	Y70 - Y82
31.	Y83 - Y84
32. 2 1 1	

-. “ ”
 (L23.3)
 -. “ , 가 ”
 A00 ~ R99 가 가
 -. “ ”
 -. “ ”
 -. “ , ”
 -. “ ”
 -. “ ” (Y35.5)

(3) _____

1	1. 2. 3. 4. ? 5. 6. 7. , 8. , 9. ,
2	1. 2. ? 3. 4. 10 가 5. 3 2 7 가 3 2 7 4 5 11 가 6.

3	1. 2. 3. 3 2 4. 5. 3 2 6. 5 가 7. 가 가 4 가 8. 10 가 9. () 10. 4 5 6 가 4 5 6 가
4	1. 2. 3. 4. ? , 5. 3 1 6. 3 1 7. 가 5cm 8. 가 가 9. 가 가 1 가 3 가

4	10. 5 가 11. 가 가 3 가 12. 10 가 13. 5 가 14. 15. () 16.
5	1. 2. 3 2 3. 3 2 4. 가 가 5. 가 가 1 가 2 가 6. 가 가 3 가 7. 가 가 8. 가 가 1 가 3 가 9. 5 가 10. 가 2 가 4 가 11.

5	12. 13. 가 14. () 15. 16.
6	1. 2. 3 1 3. 3 1 4. 가 3cm 5cm 5. 가 가 6. 가 가 2 가 7. 가 가 2 가 8. 가 가 1 가 2 가 9. 가 4 가 10. 가 3 가 11. 12. 13. 가 14.

()

1. 가
가.

. 가

- 가 가

- .

(A.M.A) 가

4

,

A.M.A.

2. “ ”

(,)가

(1)

(2)

(3)

(4) ,

(5)

3. “ ”

(1) , (2)

(5) 2 ,

, (1)

4. “ ”

“ ”

1) (1) , (2)

(5) 1 ,

, (1)

()

2) , 가
가

5. “ ”

0.02

가

6. “ ”

0.06

가

7. “ ”

가. “ ”

1) (ㄱ, ㅋ, ㆁ) , (ㄴ, ㄷ, ㄹ) , (ㅈ, ㅊ) ,
(ㅇ, ㅎ) 3 가

2) 가

3) 가

“ ”

() 가

8. “ ”

가. “ ”

2

가

“ ”

가

9. “ ”

500 , 1000 , 2000 , 4000

a , b , c , d

() $\frac{1}{6}(a+2b+2c+d)$ 80 ()

() 가

10. “ ”

60 () (40cm

) 가

11. “ ”

가 가

12. “ ”

3 (, , ,)
가 ()
) .

13. “ ”
3 AMA 가
1/2 ,
($\Sigma \times$)
1/2

14. “ ”
가
가. “ ”
35 ° 20 °
(側灣)
. “ ”
15 ° 10 °
(側灣) , 50%
. “ ”
(側灣)
. “ ”
가
1/4
AMA 가
. “ ”
가
1/2
AMA 가
. “ ”
가
3/4
AMA 가
15. “ 가 ”

가. “ 가 ”
가 (), 가 ()
)

. “ 가 ”

1) 가 () $\frac{1}{2}$
()

$\frac{1}{2}$ 가 .

2) 가 ()
() ()
 $\frac{1}{2}$ 가 .

16. “ 가 ”

가. “ 가 ”
가 (가) .

. “ 가 ”

1) 가 () $\frac{1}{2}$
()

$\frac{1}{2}$ 가 .

2) 가 ()
() ()
 $\frac{1}{2}$ 가 .

17.

가.

10 cm 5 cm

.

5 cm 10 cm 2 cm 5 cm

18.

, (陰? :)가

.

19.

, , (CT , MRI ,)
 ,
 ,
 가. “ ”
 2
 . “ ”
 - ,
 , 가
 - 가
 가
 . “ ”
 - ? ? 가
 20. “ ”
 가. (가 ,
 , ,)
 . (가 , , ,)
 .
 .
 .
 .
 1 5,6,7,8,9 , 2 3,4,5 , 3 8 4
 12 , , , 10 가 가
 .
 21. “ ”
 “ ”
 가.
 . 가
 . 가

1

1 【 】

2 【 】

3 【 】

4 【 】

5 【 】

6 【 】

2 ()

7 【 】

8 【 】

9 【 】

3 ()

10 【 】

11 【 】

12 【 】

13 【 】

4

14 【 】

15 【 】

5

16 【 】

1

1 【 】

가 . 가

1

가

1

$$\frac{1}{2} \quad , \quad 2$$

1

(가

1. , 가 가 1

9

)

1

2 【 】

•

3 【 3 】

가

•

•

가 가

,

가

13 ()

4 【

,

•

1

•

5 【 】

가

•

6 【 】

가
(“ ”) 1 가
가 .

$$2 \quad (\quad)$$

7 【 7 】

1

8 【 】

•

1

1 2 .

9 【

•

•

3 ()

10 【 】

가 1 가
(“ ”) (1 “ ”)

•

11 【 】

가

2 3 가 .

10 () 1 가
, , 27 ()
2 (2) (“ ”)

가
10 () 180
180

가
가
1 10 () 가
가

12 【 】
가 가

1. 가
가 (가
) 2 1 가

2. 가
가

3. 가
1 가

1. 1 1
2. 1 2
3. 1 3

13 【 】
“ ”

4

14 【

1. ()
2. (,)
- 3.
4. ()
5. , 가
1 2 , 3

15 【

13 () 1

1. 가 : 1 50%,
1 1%
2. : +1%

5

16 【 】

가

(1) _____

(: 가 1,000)
(10)

가 1	1,000
가	

(2) _____

(2)
“ ”

(3) _____

(3)
“ ”

가

가

1

1 【 】

2 【 】

3 【 】

4 【 】

5 【 】

6 【 】

2 ()

7 【 】

8 【 】

9 【 】

3 ()

10 【 】

11 【 】

12 【 】

13 【 】

4

14 【 】

15 【 】

5

16 【 】

가

1

1 【 】

가 가
가 . (“ ” “ ” ; “ ” “ ” ;
“ ” “ ”)

1

가

.

. , 2

1

(

가

1

,

가

가

1

,

.)

.

2 【 】

.

3 【 】

가

.

.

가

가

,

가

13 ()

.

4 【 】

,

.

1

.

5 【 】

가

.

6 【 】

, 가 3
(“ ”) 1 가
가 .

2 ()

7 【 】

.

8 【 】

.

.

.

1 2

.

9 【 】

.

.

3 ()

10 【 】

가 1 가
(“ ”) 가 .(1
“ ”)

11 【 】

2 3 가

.

10 () 가
, , 27 () 2

(2) (“ ”) 가

10 () 180

180

가

가

1 10 () 가

가

10 () 가

(“ ”)

가

5 가 5

5 가

가 가

12 【 】 가 가

1. 가 (가
 2. 가 가
 3. 가 1 가
1. 1 1
 2. 1 2
 3. 1 3

13 【 】

4

14 【 】

1. ()
2. (,)
- 3.
4. ()
5. 가

1 2 , 3

2

15 【 】

14 () ,

3 ,

10 .

1

7

10 () 2 가

가 7 가

, 가

1. 가 :

2. : +1%

13 () 1

1. 가 : 1 50%,

1 1%

2. : +1%

가 2 10 () 2 가

1. 가 (, 가
2. (, 가
3. : 1 50%, 1% : +1%

5

16 【 】

가

(1) _____

(: 가 1,000)

가 (10)

가 1	10 (5)

(2) _____

(2)

“ ”

(3) _____

(3)

“ ”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 제 6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 7조 【보험료의 납입】
- 제 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제 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제13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 제14조 【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1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16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 제17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연금지급개시전, 제1보험기간, 만65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확정연금 최종지급일 등)까지로 합니다.

제 6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별표3에서 정하는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보험기간중 사망하였을 때
- 2.보험기간중 장애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0조 제1호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②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 ④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

항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4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의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제5관 기타사항

제17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시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별표2)

재 해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의 약관(별표3)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애등급분류해설)

1. 장애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애의 정의

장애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애의 평가시 하나의 장애가 두 개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참조, 이하 같다)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애가 아닌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의 눈의 장애는 제외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ㄱ, ㅋ, ㆁ),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ㆁ)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7.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무배당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무배당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 성립과 유지

-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제2조 【특약 내용의 변경】
- 제3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제4조 【특약의 보험기간】
- 제5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6조 【보험료의 납입】
- 제7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제12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 제13조 【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등

- 제16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주계약", 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2조 【특약 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3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제 5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급여금의 총한도까지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7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급여금(별표1"급여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 ② 제2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 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 ③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해급여금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⑤ 제3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4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⑥ 장해로 인한 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로 합니다.

⑦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1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3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 3. 보험증권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6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급여금 지급기준표

－. 재해장해급여금(약관 제9조)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액	제2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70% 제3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제4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30% 제5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 제6급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별표2)

재 해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의 약관(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의 약관(별표3)“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3

1

1 【 】

2 【 】

3 【 】

4 【 】

5 【 】

6 【 】

2 ()

7 【 】

8 【 】

9 【 】

3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4 가

17 【 】

5

18 【 】

19 【 】

6

20 【 】

1

1 【 】

가 .(“ ”, “ ”,
“ ”)

90
.

2 【 】

가 ,

1.

2. 15 ,

3. 가 90

3 【 】

. .
가 가
, 가 16 ()
.

4 【 】

,

1

5 【 】

가 .

6 【 】

, 가 2
(“ ”) 1 가
가 .

2 ()

7 【 】

,

.

8 【 】

.

(“ ”)

.

.

1 .

9 【 】

.

.

1 () 2 .

3 ()

10 【 】

“ ”

(3 “ ”) .

,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3

C44 (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

. 가 ,

(fixed tissue) (hemic system)

. , 가

- 가
- 가
- 11 【 】
- “ ”
- (4 “ ”)
- 가
- (fixed tissue) (hemic system)
- 가
- 가
- 가
- 12 【 】
- “ ” 5()
- 3 2 (
-) 가
- 2 ?
- (barinCTscan), (MRI), (PET),
- (SPECT),
- 13 【 】
- “ ”
- 6()
- 3 2 (
-) 가
- 2 , ,
- 14 【 】
- 가 ,
- 1 () 2
- (“ ”)
- 3 (1 “ ”)
- 15 【 】

가

2 3 가 , ,

14 () 3 ,
1 .

가 1 () 2

,
14 () 3 가 . , 1 ()
) 2 .

16 【 】

.
.

4 가

17 【 】

가
. ,
가

180 ,
.

5

18 【 】

1. ()
2. (, , ,)
3.
4. ()
5. 가
1 2 ,
3 2
.

19 【 】

18 () ,

3 ,

10 .

1

7

.

16 () 1

.

1. 가 : 1 50%,

1 1%

2. : +1%

6

20 【 】

.

가

.

(1) _____

(: 가 1,000)

3 (14)	
가 , 1 () 2 (, , 1)	500
가 (1)	100

(2) _____

(3)
“ ”

(3) _____

“ ” 3 (1993-3 , 1995. 1. 1)

1. ,	C00 ~ C14
2.	C15 ~ C26
3.	C30 ~ C39
4.	C40 ~ C41
5.	C43 ~ C44
6.	C45 ~ C49
7.	C50
8.	C51 ~ C58
9.	C60 ~ C63
10.	C64 ~ C68
11. ,	C69 ~ C72
12.	C73 ~ C75
13.	C76 ~ C80
14. ,	C81 ~ C96
15. ()	C97

(4) _____

“ ” 3 (1993-3 1995.1.1)

1. ,	D00
2.	D01
3.	D02
4.	D03
5.	D04
6.	D05
7.	D06
8.	D07
9.	D09

4

(5) _____

“ ” 3 (1993-3 , 1995. 1. 1)

1.	I60
2.	I61
3.	I62
4. ()	I63
5. ()	I65
6.	I66

4

(6) _____

“ ” 3 (1993-3 ,
1995. 1. 1) .

1.	I21
2.	I22
3.	I23

무배당 체감 정기 특약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무배당 체감정기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 제 6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 7조 【보험료의 납입】
- 제 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제 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제13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 제14조 【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15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16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 제17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체감정기특약 약관

제1관 특약의 성립 및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의 매출이 승인된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제 6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만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에 따라 특약보험가입금액에 보험년도별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이익“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③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전쟁 ,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4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보험증권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를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5관 기타사항

제17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가. 지급사유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나. 지급액

① 7년만기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액
1년미만	100.0%
1년이상 2년미만	85.7%
2년이상 3년미만	71.4%
3년이상 4년미만	57.1%
4년이상 5년미만	42.9%
5년이상 6년미만	28.6%
6년이상 7년미만	20.0%

② 10년만기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액
1년미만	100.0%
1년이상 2년미만	90.0%
2년이상 3년미만	80.0%
3년이상 4년미만	70.0%
4년이상 5년미만	60.0%
5년이상 6년미만	50.0%
6년이상 7년미만	40.0%
7년이상 8년미만	30.0%
8년이상 9년미만	20.0%
9년이상 10년미만	20.0%

③ 15년만기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액
1년미만	100.0%
1년이상 2년미만	93.3%
2년이상 3년미만	86.7%
3년이상 4년미만	80.0%
4년이상 5년미만	73.3%
5년이상 6년미만	66.7%
6년이상 7년미만	60.0%
7년이상 8년미만	53.3%
8년이상 9년미만	46.7%
9년이상 10년미만	40.0%
10년이상 11년미만	33.3%
11년이상 12년미만	26.7%
12년이상 13년미만	20.0%
13년이상 14년미만	20.0%
14년이상 15년미만	20.0%

④ 20년만기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액
1년미만	100.0%
1년이상 2년미만	95.0%
2년이상 3년미만	90.0%
3년이상 4년미만	85.0%
4년이상 5년미만	80.0%
5년이상 6년미만	75.0%
6년이상 7년미만	70.0%
7년이상 8년미만	65.0%
8년이상 9년미만	60.0%
9년이상 10년미만	55.0%
10년이상 11년미만	50.0%
11년이상 12년미만	45.0%
12년이상 13년미만	40.0%
13년이상 14년미만	35.0%
14년이상 15년미만	30.0%
15년이상 16년미만	25.0%
16년이상 17년미만	20.0%
17년이상 18년미만	20.0%
18년이상 19년미만	20.0%
19년이상 20년미만	20.0%

(별표2)

재 해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의 약관(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의 약관(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 성립과 유지

-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 제 6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 7조 【보험료의 납입】
- 제 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제 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10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제14조 【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1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16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6관 기타사항

- 제17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수술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신용카드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로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제 6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만 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별표4 참조)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피보험자가 별표3에서 정하는 장애등급분류표(이하“장애분류표”라 합니다)중 제 2급 내지 제3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1종류의 수술에 대하여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③ 특약이 유효한 중에 장애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5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6관 기타사항

제17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지급기준표

(특약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 수술급여금 (약관 제 11조)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지 급 액	1종수술	20만원
	2종수술	50만원
	3종수술	100만원

재 해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의 약관(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의 약관(별표3)“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별표4)

수 술 분 류 표

수 술 명	수술종류분류(종)
* 피부·유방의 수술(皮膚·乳房의 手術)	
1. 식피술(植皮術) (25㎠미만은 제외함)	2
2. 유방절단술(乳房切斷術)	2
* 근골의 수술 (筋骨의 手術) [발정술(拔釘術)은 제외함]	
3. 골이식술(骨移植術)	2
4. 골수염·골결핵 수술 (骨髓炎·骨結核 手術)	2
[농양(膿瘍)의 단순한 절개는 제외함]	
5. 두개골 관혈수술(頭蓋骨觀血手術)	
[비골·비중격(鼻骨·鼻中隔)은 제외 함]	2
6. 비골 관혈수술(鼻骨 觀血手術)	
[비중격만곡증수술(鼻中隔彎曲症手術)은 제외함]	1
7. 상악골·하악골·악관절 관혈수술	
(上顎骨·下顎骨·顎關節 觀血手術)	2
[치·치육(齒·齒肉)의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8. 척추·골반 관혈수술(脊椎·骨盤 觀血手術)	2
9. 쇄골·견갑골·늑골·흉골 관혈수술	1
(鎖骨·肩胛骨·肋骨·胸骨 觀血手術)	
10. 사지절단술(四肢切斷術)[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2
11. 절단사지재접합술(切斷四肢再接合術)	2
[골·관절(骨·關節)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2. 사지골·사지관절 관혈수술(四肢骨·四肢關節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1

수 술 명	수술종류분류(종)
13. 근·건·인대 관혈수술 (筋·腱·靱帶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근염·결 절종·점액종수술 (筋炎·結節腫·粘液腫手術은 제외함)]	1
* 호흡기·흉부의 수술(呼吸器·胸部 의 手術)	
14. 만성부비강염 근본수술 (慢性副鼻腔炎 根本手術)	1
15. 후두전적제술(喉頭全摘除術)	2
16. 기관·기관지·폐·흉막수술(氣管·氣管支·肺·胸 膜手術) [개흉술(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2
17. 흉곽형성술(胸郭形成術)	2
18. 종격종양 적출술(縱隔腫瘍 摘出術)	3
* 순환기·비의 수술(循環器·鼻의 手術)	
19. 관혈적혈관 형성술(觀血의血管 形成術) [혈액투석용(血液透析用)외SHUNT형성술 (形成術)을 제외함]	2
20. 정맥류근본수술 (靜脈瘤 根本手術)	1
21. 대동맥·대정맥·폐동맥·관동맥수술 (大動脈·大靜脈·肺動脈·冠動脈手術) [개흉·개복술(開胸·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
22. 심막절개·봉합술(心膜切開縫合術)	2
23. 직시하심장내수술(直視下心臟內手術)	3
24. 체내용(體內用) Pace Maker 매입술(埋込術)	2
25. 비적제술(鼻摘除術)	2
* 소화기의 수술(消化器의 手術)	
26. 이하선종양 적출술(耳下腺 腫瘍 摘出術)	2
27. 악하선종양 적출술(顎下腺腫瘍 摘出術)	1
28. 식도이단술(食道離斷術)	3
29. 위절제술(胃切除術)	3

수 술 명	수술종류분류(종)
30. 기타의 위·식도수술(胃·食道手術) [개흉·개복술(開胸·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
31. 복막염수술(腹膜炎手術)	2
32. 간장·담낭·담도·췌장 관혈수술 (肝臟·膽囊·膽道·胰臟 觀血手術)	2
33. 탈장 근본수술(脫腸 根本手術)	1
34. 충수절제술·맹장봉축술 (蟲垂切除術·盲腸縫縮術)	1
35. 직장탈 근본수술(直腸脫 根本手術)	2
36. 기타의 장·장간막수술 (腸·腸間膜手術) [개복술(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
37. 치루·탈항·치핵 근본수술(痔瘻·脫肛·痔核 根本手術) [근치(根治)를 목적으로한 것으로 처치 ·단순한 치핵(痔核)만의 수술은 제외함]	1
* 뇨·성기의 수술 (尿·性器 의 手術)	
38. 신이식수술(腎移植手術)[수용자(受容者)에 한함]	3
39. 신장·신우·뇨관·방광 관혈수술 (腎臟·腎盂·尿管·膀胱 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외함]	2
40. 뇨도협착 관혈수술(尿道狹窄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외함]	2
41. 뇨루폐쇄 관혈수술(尿瘻閉鎖 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외함]	2
42. 음경절단술(陰莖切斷術)	3
43. 고환·부고환·정관·정색·정낭·전립선수술 (睪丸·副睪丸·精管·精索·精囊·前立腺手術)	2
44. 음낭수종 근본수술(陰囊水腫 根本手術)	1
45. 자궁광범전적제술(子宮廣汎全摘除術) [단순자궁전적(單純子宮全摘) 등의 자궁전적제술 (全摘除術)은 제외함]	3

수 술 명	수술종류분류(종)
46. 자궁경관형성술·자궁경관봉축술 (子宮頸管形成術·子宮頸管縫縮術)	1
47.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1
48. 자궁외임신수술(子宮外妊娠手術)	2
49. 자궁탈·질탈수술(子宮脫·膣脫手術)	2
50. 기타의 자궁수술(子宮手術) [자궁경관 Polyp 절제술·인공임신중절술(子宮頸管 Polyp 切除術·人工妊娠中絶術)은 제외함]	2
51. 난관·난소 관혈수술(卵管·卵巢 觀血手術) [경질적조작(經腔的操作)은 제외함]	2
52. 기타의 난관·난소수술(卵管·卵巢手術)	1
* 내분비기의 수술(內分泌器의 手術)	
53. 하수체종양적제술(下垂體腫瘍摘除術)	3
54. 갑상선수술(甲狀腺手術)	2
55. 부신전적제술(副腎全摘除術)	2
* 신경의 수술(神經의 手術)	
56. 두개내 관혈수술(頭蓋內 觀血手術)	3
57. 신경 관혈수술(神經 觀血手術) [형성술·이식술·절제술· 감압술·개방술·염제술(形成術·移植術·切除術·減壓術· 開放術·捻除術)]	2
58. 관혈적척수종양 적출수술(觀血的脊髓腫瘍 摘出手術)	3
59. 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脊髓硬膜內外 觀血手術)	2
* 감각기·시기의 수술(感覺器·視器의 手術)	
60. 안검하수증수술(眼瞼下垂症手術)	1
61. 누소관형성술(淚小管形成術)	1
62. 누낭비강문합술(淚囊鼻腔 吻合術)	1
63. 결막낭형성술(結膜嚢形成術)	1
64. 각막이식술(角膜移植術)	1

수 술 명	수술종류분류(종)
65. 관혈적전방·홍채·초자체·안와내이물제거술 (觀血的前房·虹彩·硝子體·眼窩內異物除去術)	1
66. 홍채전후유착박리술 (虹彩前後癒着剝離術)	1
67. 녹내장 관혈수술 (綠內障 觀血手術)	2
68. 백내장·수정체 관혈수술 (白內障·水晶體 觀血手術)	2
69. 초자체 관혈수술(硝子體 觀血手術)	1
70. 망막박리증수술(網膜剝離症手術)	1
71. Laser·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수술(眼球手術) [시술(施術)개시일 부터 60일간 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1
72. 안구적제술·조직충전술(眼球摘除術·組織充填術)	2
73. 안와종양 적출술(眼窩腫瘍 摘出術)	2
74. 안근이식술(眼筋移植術)	1
* 감각기·청기의 수술(感覺器·聽器의 手術)	
75. 관혈적고막·고실형성술(觀血의鼓膜·鼓室形成術)	2
76. 유양동삭개술(乳樣洞削開術)	1
77. 중이 근본수술(中耳 根本手術)	2
78. 내이 관혈수술(內耳 觀血手術)	2
79. 청신경종양 적출술(聽神經腫瘍 摘出術)	3
* 악성신생물의 수술(惡性新生物의 手術)	
80. 악성신생물 근치수술(惡性新 生物 根治手術)	3
81. 악성신생물 온열료법(惡性新生物 溫熱療法)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 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1
82. 기타의 악성신생물수술 (惡性新生物手術)	2

수 술 명	수술종류분류(종)
* 상기 이외의 수술(上記 以外の 手術) 83.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84.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85.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86. 충격파(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 (體內結石破碎術)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87. Fiberscope 또는 혈관(血管)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후두·흉부·복부 장기수술 (腦·喉頭·胸部·腹部 臟器手術) [검사·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 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2 2 1 2 1
* 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 (新生物根治放射線照射) 88. 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 (新生物根治放射線照射)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로 시술 (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1

(주) 1.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이란

미용성형상의 수술,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진단·검사
[생검, 복강경 검사 (生檢, 腹腔鏡 検査)등]를 위한 수술 등은 「치료를 직
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상기 「手術分類表」상의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 「手術分類表」
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무배당 입원보장특약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무배당 입원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제 3조 【특약 내용의 변경】
- 제 4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 제 6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 7조 【보험료의 납입】
- 제 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제 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10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3조 【보험금의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제14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 제15조 【해약환급금】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1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17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6관 기타사항 등

- 제18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무배당 입원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 합니다.

제 3조 【특약 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연금지급개시전, 제1보험기간, 만7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확정연금 최종지급일 등)까지로 합니다.

제 6조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

도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별표2(질병 및 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질병” 또는 “재해”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병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

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거나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⑤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입원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입원급여금을 제외 한 나머지 입원급여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2.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입원급여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전쟁 ,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5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입원확인서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입원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입원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7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1.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2. 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8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입원급여금(약관 제11조)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지 급 액	10,000원

(별표2)

질병 및 재해분류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00 - B99
2. 신생물	C00 - D48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D50 - D89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00 - E90
5. 신경계의 질환	G00 - G99
6.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0 - H59
7.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H60 - H95
8. 순환기계의 질환	I 00 - I 99
9. 호흡기계의 질환	J00 - J 99
10. 소화기계의 질환	K00 - K93
11.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L00 - L99
12.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 - M99
13.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N00 - N99
14. 임신, 출산 및 산욕	O00 - O99
15.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 - P96
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	R00 - R99
17.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 - T98
18.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V01 - Y98
·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애(심신상실, 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별표3) 재 해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의 약관(별표2)“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4)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애등급분류해설)

1. 장애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애의 정의

장애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애의 평가시 하나의 장애가 두 개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 지침에 의한 장애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애가 아닌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의 눈의 장애는 제외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ㄱ, ㅋ, ㆁ),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7.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1

1 【 】

, 가

가

(“ ”, “ ”, “ ”)

1

가

.

가

, 8 (

)

가

.

2 【 】

. 1

2

.

3 【 】

가

가

.

4 【 】

,

.

1

.

5 【 】

가

12

.

1

1

“

” “

”

.

2

()

6 【 】

7 【 】

3 ()

8 【 】
5 () 3
가 가 (“ ”
) 6 (“ ”)

9 【 】

가

,

가

가

,

10 【 】

가 8 ()

4

11 【 】

가

가

12 ()

(“ ”)가 13 ()

1.

2.

3

1 가

12 【 】

1. ()

2.

3.

4. ()

13 【 】

5 ()

가

1. ()

2.

3.

4.

5. ()

6. ()

7.

17 【 】

특별조건부특약 약관

특별조건부특약 약관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진단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에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 특약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주된 보험계약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한 것을 말하며,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이라 합니다.
- ② 특약을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 피보험자 (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③ 특약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2조 (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 3조(특약의 부가조건)

- ① 특약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割増危険率)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標準體)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계약체결시 위험의 정도에따라 표준체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削減期間)내에 보험계약의 규정에 정하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보험계약에 정한 지급보험 금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80%	60%
4년이상 5년미만						80%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하거나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된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연령가산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채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연령간의 차이를 연증수(年增數)라 합니다.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의 위험지수(危險指數)가 실제 n세 높은 연령의 표준채와 같은 위험률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n년증이라 칭하고 n세 높은 연령의 표준채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4. 연령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併用)할수 있습니다.

-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4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제 5조 (특약내용의 변경)

이 특약은 주계약의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제 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약관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약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1)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을 체결 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2)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 【특별면책조건의 내용】

- (1) 주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1종의 경우는 제2항 제1호의 조건을 부가하고 2종의 경우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부가합니다
- (2)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망 또는 제1급의 장애상태로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별표1 "특정부위 분류표"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2. 별표2 "특정질병분류표"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 (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 (3) 제2항의 면책기간은 특정질병 또는 특정부위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

년」 또는 「주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별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7) 제2항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2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 할 수 있습니다.

제 3조 【해지특약의 부활】

(1)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口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2)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4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특정부위분류표

구 분	특 정 부 위
1	위, 십이지장 또는 공장
2	맹장(충수돌기 포함) 또는 회장
3	직장 또는 항문
4	간장, 담낭 또는 담관
5	췌장
6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또는 흉곽
7	코(외비, 비강 또는 부비강 포함)
8	인두 또는 후두
9	구강, 치아, 혀, 악하선, 이하선, 또는 설하선
10	귀 (외이, 고막, 중이, 내이, 청신경 및 유양돌기 포함)
11	안구 또는 안구부속기 (안검, 결막, 누기, 안근 또는 안와내 조직 포함)
12	신장
13	요관, 방광 또는 요도
14	전립선
15	유방 (유선 포함)
16	자궁 (이상분만의 경우 포함)

17	난소 또는 난관
18	고환 (고환초막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또는 정낭
19	갑상선
20	경추부 (해당신경 포함)
21	흉추부 (해당신경 포함)
22	요추부 (해당신경 포함)
23	선골부 또는 미골부 (해당 신경 포함)
24	좌견관절부
25	우견관절부
26	좌고관절부
27	우고관절부
28	좌상지 (좌견관절부 제외)
29	우상지 (우견관절부 제외)
30	좌하지 (좌고관절부 제외)
31	우하지 (우고관절부 제외)
32	자궁체부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33	서혜부 (서혜 헤르니아, 음낭 헤르니아 또는 대퇴 헤르니아 가 생긴 경우에 한함)
34	식도
35	대장 (맹장 및 직장 제외)

(별표 2)

특정질병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질병으로 분류된 질병은 제3차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1993호,1995.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구 분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심장질환	I00 ~ I02
		I05 ~ I09
		I20 ~ I25
		I26 ~ I28
		I30 ~ I52
2	뇌혈관질환	I60 ~ I69
3	당뇨병	E10 ~ E14
4	고혈압	I10 ~ I14
5	결핵	A15 ~ A19
		B90

※ 제4차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재 해 분 류 표

무배당 알리안츠 종신보험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